

 보건복지부		<h1>보도자료</h1> <h2 style="color: red;">배포 즉시</h2>	
배 포 일	2020. 7. 3. / (총 7매)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과 장	설 예 승	전 화	044-202-3051
담 당 자	강 태 수		044-202-3054

더 포용적인 기준 중위소득이 다가옵니다

- 공식 소득통계이며 중위소득 수준이 더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기반 통계 변경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일(금)에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최종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하여 산출한다.

- 단,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 (예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활용 가능한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6~2018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치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경기 변동 · 수급자 최저생활수준 등을 감안한 최종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7월 말까지 결정

□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도입되었다.

○ 도입 당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전년도 가계동향조사 (농어가 포함, 이하 같음)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이 방식은 과거 시점의 소득 통계를 활용해 2년의 시차가 있는 미래의 중위소득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측치와 실제 통계의 중위소득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반복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하락할 수 있다.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사례) 2016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인 423.8만 원을 바탕으로, 2017년 434.4만 원, 2018년 445.3만 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이전 예측치를 바탕으로 이미 산출했던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46.7만 원으로 2018년 예측 수준(445.3만 원)보다 높음

○ 이에 그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에 최신 가계동향조사 등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결정해 왔다.

* (2018년도) 가계동향조사 최신 단년도 증가율 → (2019년도) 가계동향조사 최신 3개년 평균 증가율 → (2020년도)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개년 평균 증가율 조합

○ 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TF'를 운영하였다.

□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통계원을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 생산

□ 또한 산출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원

□ 이날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는 해이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종합계획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오는 7월 말 열릴 예정인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 < 붙임 >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산출 연혁
 3.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 : 복지부 장관(위원장) 및 국토부 · 교육부 · 기재부 · 행자부 · 고용부 차관
 - 위촉직(10인) :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2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현소속 및 직위
당연직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위촉직	전문가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대명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
		이병희	노동연 선임연구위원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익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승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임연기	공주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붙임 2

기준 중위소득 개요 및 산출 연혁

- (정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법 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산출 연혁

- (舊원칙) 최신 가계동향조사(농어가포함) 중위소득(실측치)*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증가율'을 2번 적용해서 산정('15.4월, 제49차 중생보)

* (예시) '18년도 기준중위소득 산출 시 '16년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 다만, '소득 증가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자료원 단절' 등 산출 방식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생보 논의로 조정 가능(제49차 중생보)

- ('16~'17) 기존 원칙으로 산출

- ('16) 4,060,128원('14가계동향조사) × 4.00% × 4.00% = 4,391,434원

- ('17) 4,189,755원('15가계동향조사) × 3.26% × 3.26% = 4,467,380원

- ('18~'20) 기존 원칙 적용 시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문제 발생*으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특정 증가율('18년 최신 1년 증가율 / '19~'20년 3년 평균 증가율) 적용

* ('18년 기존방식 기준중위소득) 4,452,475원 < ('17년도 기준중위소득) 4,467,380원

- ('18) 4,467,380원('17기준중위) × 가계동향조사 최신 증가율(1.16%) = 4,519,202원

- ('19) 4,519,202원('18기준중위) × 가계동향조사 3년 평균증가율(2.09%) = 4,613,536원

- ('20) 4,613,536원('19기준중위) × 가계동향-가금복 3년 증가율의 평균(2.94%)* = 4,749,174원

* 가계동향 3년 평균증가율 1.66%, 가금복 3년 평균증가율 4.21%

붙임 3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총 73개 사업(2020년 기준)**

- (소관부처) 고용부 6개, 교육부 7개, 보건처 6개, 국토부 1개, 문체부 1개, 법무부 2개, 복지부 34개, 산림청 3개, 여성부 10개, 해수부 1개, 행안부 1개, 환경부 1개

* 자료 출처 :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등

연번	사업명	소관 부처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고용노동부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4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5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6	해외취업 지원(정착지원금)	
7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8	국가장학금	
9	급식비	
10	(기초생활) 교육급여	
1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2	평생교육바우처	
13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처
14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5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1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7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18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9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국토교통부
20	(기초생활) 주거급여	문화체육관광부
21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2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센터	법무부
23	법률구조 제도	
24	(기초생활)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5	(기초생활) 의료급여	
26	(타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2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8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연료비·전기요금, 해산·장제비)	
29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0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3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32	발달재활서비스	

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5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36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37	언어발달지원	
38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39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I, II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40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41	장애(아동)수당	
4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3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44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45	장애인 연금(차상위)	
4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8	재난적 의료비 지원	
4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51	지역아동센터 지원	
52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53	차상위계층 확인	
54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55	치매 검진 지원	
56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57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8	공공산림가꾸기	
59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청
60	산림재해 일자리	
6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6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3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64	미혼모·부 초기지원	
65	아이 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66	청소년특별지원	
6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8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9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7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71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해양수산부
7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73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